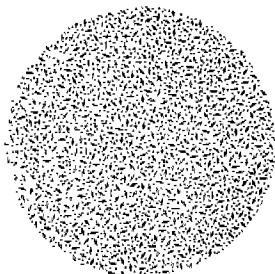


主要先進國의 產業 安全管理制度比較

Comparison of Industry Safety
Control System Between Main
Advanced Countries



李 根 喆

本協會編修委員

1. 序 言

1960年代의 電子產業과 함께 신속히 발전한 分野로서 에너지와 化學工業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電子產業은 產業構造의 확대와 技術의高度化를 促進함으로써 事故의 大形化와 最高度의 產業技術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時代의 趨勢속에서 1970年代를 맞이하여 에너지패턴의 國際的인 變化는 또다른 災害樣相을 나타내기 시작함으로써 安全保健管理体制에 一大手術을 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이러한 狀況의 急進의 변화는 美國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安全保健体制의 全面的인 再檢討를 한 결과 1970年에 탄생한 것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라고 하는 安全保健法 이었다.

한편 日本은 1972年에 美國에 이어 「勞動安全保健法」을 制定함으로써 先進國임을 誇示하게 되었다. 英國은 1973년에 体制整備에 착수하여 1974年에는 美國의 安全保健法을 英國의 地리적 조건과 사회적諸要件를 가장 適切하게 조화시킨 統一의인 安全保健管理体制를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安全保健法의 制定이었다. 「Health and Safety of Work Act 1974」

그러나 世界에서 가장 오랜 安全의 역사를 가진 서독은 安全保健体制를 再整備하여 安全技師, 安全專門要員 및 產業保健醫師(保健管理者)에 관한 法律을 公表하게 된 것이다.

스웨덴은 1973년에 勤勞者保護法을 改正하여 企業의 安全管理体制를 조직화하는 한편 機械設備等의 設備製造에 있어서 事前承認制를 設定함으로써 安全에 의한 生產性의 向上과 더불어 製品의 安全化를 도모하여 技術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1977年에는 作業環境法을 制定하여 安全保健問題를 보다 高次元의in 次元에서 운용을 企圖하였다. 특히 日本은 1977年の 1次改正을 通하여 原子爐와 有害危險物에 대한 規制를 強化하였으며 1980年の 2次 改正에서는 建設業의 安全을 강화하였다.

上記한 바와같이 先進國은 1970年代 初半에 일제히 安全保健管理体制를 整備改正하는 등 國家의 次元에서 보다 根本의in 체계정비를 斷行하게 되었다.

이들先進國의安全保健管理体制는 1970年代以前에는極히制限된事業場의概念 속에서安全保健management를推進해왔으나現代社會의產業依存度가높아짐에따라서모든機械器具나設備등에의한災害事故가增加함으로써人間의福祉와企業繁榮을위한產業技術이아니라危險이수반된生產에서는安全性이없이는企業이繁榮할수없다는結論에서安全優先政策이내두된것이다.

이와같은体制整備의方向設定을보면美國은1960年代의우주과학기술의개발과化學및電子工業發展에따르는技術向上의도모에목표를두었다.또한產業構造의확대는單한건의災害事故로因하여엄청난物的損失을초래하게되었으며특히產業現場에서누출된有害危險物에의한社會的被害은매우엄청난것으로서公害安全問題가浮上하게되었던것이다.

따라서先進各國은安全基準의강화와中央統制機能의강화라는諸問題를解決하기위한方策의一環으로서美國과英國은勞動省에安全保健廳을新設하였으며以外에프랑스,스웨덴,서독등은一律으로勞動省傘下에安全保健의종합적감독기관으로서安全保健專擔機關을設置하게되었다.

2. 先進諸國의 安全保健制度 特徵

美,英,프랑스및西獨의安全保健法은70年代초반에전반적인再整備를거쳐確立되었으며一般的인공통점은農業이나建設分野를安全保健法에포괄적으로규제하고있는點이다.

또한適用對象에있어서는全勤勞者를대상으로하는한편事業主에대한適用基準을보다구체적으로強化하고있는것은產業技術의고도화에따르는一連의대응적조치라고간주된다.

또한上記한4個國들은다같이勞動省에安全保健을위한專擔機關으로서安全保健廳을設置하고安全保健政策의最高機關으로서安全保健委員會을國家最高機關으로설치하여서勞動部長官에게모든安全基準의制定權을賦與함과동시에基準의作成을支援하고있다.

(1) 美 國

美國은1971年4月에노동성의한기관으로서安

全保健廳(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設置하고全國10個地域에地域事務所를그리고그傘下에90餘個의地方事務所를두고있다.또한本部直轄로3個의研究所를設置하는등安全技術開發에注力하는体制를갖추고있으며龐大한國家規模로因하여民間團體를광범위하게지원육성하는소위民間主導形의安全保健体制로서中央政府의安全保健廳은주로勤勞監督과기술지원에重點을둔安全行政을모델로하고있다.

그리고美國의安全協會(N. S. C)는綜合의in安全協會로서다른전문안전단체와有機的으로相互補完의in關係를유지해가고있다.

(2) 英 國

英國은美國과같이노동성내에안전보건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과安全保健委員會(The Health and Safety Commission)를1974年과1975年に設置하고安全保健委員會에서國家의安全保健政策을樹立하고있다.

또한各安全團體및政府各機關의安全保健에관한정보제공,調印,各機關間의業務調整그리고提案등의統一의in安全保健政策施行을위한產婆의in機能을다하는이외에執行機關으로서安全保健廳은任務活動을다하고있다.

특히民間團體인安全協會(ROSPA)의機構내에家庭安全,公衆安全,農業安全,道路및水道安全을담당할專擔部署를設置運營하는것을볼때단순한事業場內의安全管理에局限하지않고汎國民의으로安全活動에참여하고있음을볼수있다.

(3) 日 本

日本은美國과英國의折衷式조직을채택하고있으며勞動省에安全衛生部를그리고最近에는환경管理室을두어危險物管理와환경오염문제를處理하고있다.傘下에는研究所와民間團體로서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를設置하여同協會도하여금모든教育과검사및技術指導事業을專擔하고있는것이다.

특별한것은事業場의最一线安全擔當者인作業主任者の地位를向上시키고資格化하여勞動者自身教育을實施하는한편機械器具등에대한製造

許可權과 檢査는 勞動長官이 갖고 있다. 以外에 보일러에 대한 安全管理基準도 設定되어 있는 點이다.

日本에서도 美國과 같이 國家規模에 따라서 各專門分野別로 安全團體를 設置하여 中央防災協會와 相互有機의이며 補完的인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防災協會傘下에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도록 支援하고 있다.

또한 企業의 自律의인 活動의 촉진 및 措置를 講究하는 등 產業災害防止에 관한 綜合의인 대책을 推進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健康을 확보함과 同時に 價値한 產業環境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4) 西 獨

西獨의 安全保健法制度는 3 가지 즉 營業法, 國家保安法, 勞動安全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로 營業法은 營業에 關聯되어 있는 事項을 規制하고 있으며 安全 및 保健에 관한 規定이 設定되어 있어 모든 產業에 適用되고 있다. 둘째로 國家保險法은 종래 獨立하여 있는 各種 勞動災害保險 즉 一般產業勞動災害保險法, 農業勞災保險法 및 船員勞災保險法을 하나로 統一한 것으로서 勞動災害가 發生하였을 때 被災害者에 대한 醫療의in 복구 및 被災害者나 그 遺族에 대한 補償등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세째로 勞動安全法은 1973年 12月에 制定된 새로

운 法律로서 正式으로 「產業醫, 安全技師, 其他 勞動安全專門Staff에 관한 法律」이라고 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安全管理組織整備를 目的으로 하는데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高等審議會를 國家機關長級의 労使代表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勞動部長官을 支援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災害防止協會도 그 最高機關인 운영위원회에 產業分野別 労組代表가 参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全國安全協會도 產災保險에서 10%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以外에 캐나다의 安全協會도 產災保險에서 運營支援을 받고 있다.

上記한 단체들은 自体研究所를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安全保健圖書館을 보유하여 情報의 모집 및 전파, 교육훈련의 實施, 事業場에 대한 綜合診斷事業도서출판, 機械의 防護裝置, 有害物質의 평가 소음 진동, 粉塵對策 및 環境安全對策 등의 광범위한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上述한 모든 民間機關(安全協會)은 教育과 弘報을 主軸으로하고 2 ~ 3個月 만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함으로써 對國民의 弘報와 企業体를 위하여 安全技術 情報提供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안전협회에서는 小數의 安全雜誌만이 發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美國

〈표-1〉 世界各國의 產業安全管理制度比較

國名 內容	美國 (1970年改定)	英國 (1974年改定)	日本 (1972年改定)	프랑스 (1974年改定)	西獨 (1973年改定)
關係法令의 特徵	職業安全保健法 (OSHA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安全保健廳新設 監督強化 2. 3個諮詢委員會 設置 3. 農業安全分野包含 4. 勞動長官緊急措置 權賦與 5. 研究事業強化 (研究所 3個所設置) 6. 民主導形(民間 安全團體) 7. 安全保健委員會 및 技師制度 	保健安全法 (H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使用者除外 한全勤勞者 2. 各部處安全業務 統合監督強化 (一般工場, 爆發場, 炭鐵, 原子力, 公害) 3. 農業分野包含 (農業監督官 163명) 4. 監督斗安全保健 事業分離 5. 安全保健委員會 및 安全技師制度 	勞動安全保健法 (安 保法) 改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事務者義務強化 2. 事務所및 建物貨 貸業適用 3. 危險機械製造許 可勞動長官 4. 災害事故報告義 務化 5. 災害豫防團體育 成(分野別) 6. 安全委員會및 安 全保健技師制度 	勞動法典 (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勞動省災害防止 局, 新設監督強化 2. 農業分野包含 (農業安全) 3. 建設分野, 工事 金額基準, 安全 適用 4. 安全保健委員會 및 安全技師制度 5. 高等審議委員會 (職業危險防止高等審議會) 設置 	勞動安全法 (CBS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企業의安全保健 組織強化 2. 特殊設備勞動長 官製造許可 3. 監督官은技術監 督官制度

(46페이지로 계속)

기사업법상 전기공급규정에서 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파스컴의 소프트가 꺼지다

최근의 또 하나의 경향은 일반가정에서 「파스컴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불명이 늘어나게 된 일이다. 몇시간이나 걸려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는데 순간때문에 순식간에 그 프로그램이 꺼지고 말았거나 워어프로에서 長文을 다 쓴 순간 그 문장이 사라진 예도 있었다.

自衛에 필수품 補助電源裝置

이러한 천둥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는지.

「최근의 기술을 구사해도 우리들 송전하는 입장에서 지금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편리한 에너지인 전기에도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용자의 여러분들은 꼭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東電에서는 말하고 있다.

전력회사측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이용자

측에서는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無停電 電源裝置(CVCF)라고 부르는 補助 電源설비이다. 이것은 일종의 축전지로서 전기의 순단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전압을 보충하여 언제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해 준다. 이 장치를 설치해 두면 전압저하로 컴퓨터나 산업로보트가 다운되거나 오동작하는 일은 없다.

CVCF는 瞬斷對策으로서는 최고이나 값이 대단히 비싼 것이다 흠이다. 일반의 파스컴, 워어프로용으로 105만원이나 한다. 파스컴 본체 값과 거의 같은 것이다.

은행의 계 산센터용으로는 7천만원 이상, 큰 공장용은 3천 5백만원 이상이나 한다. 이만큼 큰 투자를 해도 사용하는 것은 많아야 일년에 몇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영자도 쉽게 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생산공정이나 컴퓨터 정보를 지키려면 CVCF를 설치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

*

(15페0|지에서 계속)

과 英國의 安全協會에서 發行하는 安全專門誌 中에는 家庭安全(Family Safety)이 約 160萬部以上 季刊으로 定期的으로 發行하고 있으며 또한 National Safety News가 月刊으로 4萬部가 발행되고 있다. 英國에서도 經營者, 監督者, 安全要員用의 Safety News를 주로하는 月刊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ulletin이 16,000部나 發行되고 있다고 한다.

3. 韓國의 產業安全管理制度

團體로는 產業安全協會가 民間協議體로 構成되어 있고 사업체의 安全診斷과 教育등을 實行하고 있다. 또한 國內의 產業安全分野는 정부의 行政体系로는 多元化되어 있으면서도 相互 獨自의in 관계법을 갖고 있어 紐帶 및 關聯條項의 범위에서 安全의 死角地帶가 形成되어 있으며 한企業에 대하여 다른 여러개의 技術基準規制를 받을 뿐만 아니라 企業내의 安全要員에 대한 教育이나 檢查등이 중복되는 등 施行上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國내에서 設置運營되고 있는 安全團體로는

① 勞動部의 安全保健協會 ② 勤資部의 가스安全公社 및 鐵山保安協會 ③ 交通部의 交通安全振興工團 ④ 內務部의 消防安全協會 ⑤ 热管理公園 ⑥ 電氣安全公社 ⑦ 建設部의 건설협회등으로서 이들 中에서 綜合的인 安全業務를 다루고 있는 機關은 該當分野의 專門業務만 처리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主要 先進國의 安全團體는 全部自体 研究所를 갖고 있으나 國內安全團體는 自体研究所가 全無하여 安全保健活動의 適用範圍가 사업장 中心의 근로자 安全에서 脫皮하여 家庭, 農業, 火災爆發등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勞動部傘下의 勞動科學研究所가 유일한 安全保健研究所로서 檢查와 장비등을 갖추고 있을 뿐이며 以外에 勤資部의 가스安全公社가 검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단지 가스分野에 국한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產業安全保健法을 改善中에 있으며 政府에서는 84年 12月부터 85年 3月까지 產業安全管理 綜合診斷을 실시하여 새로운 對策을 政府次元에서 模索中에 있다.

*